

## 2018년 객관식 소방공무원법 정오표(6.25)

페이지(p)	오(수정 전)	정(수정 후)
p 18 31번 M	중앙소방학교의 장이다.	소방청장이다.
p 18 31번 해설	소방청장이다.	중앙소방학교의 장이다.
p 19 35번 G,M 및 해설	소속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	소속 소방정에 대한 전보
p 19 36번 M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	소방령에 대한 강등
p 35 87번 해설	위임하고 있으나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은 소방청장이 가진다.	위임하고 있다. 승진임용의 경우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35 87번 정답	M	A
p 36 89번 G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이 가능하다.	소방령에 대한 강등이 가능하다.
p 36 89번 해설 G 대체		중앙소방학교장은 소속 소방령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이 가능하다.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령에 대한 강등은 소방청장이 한다.
p 77 99번 M	시험성적에 순위	시험성적 순위
p 100 20번 해설	상응한 1년	상응한 6월
p 108 43번 해설	행자부 장관	행안부 장관
p 150 45번 G	소방정책국장	차장
p 172 107번 해설 ①	소방위 · 지방소방위	삭제
p 172 107번 해설 ②	소방장 · 지방소방장 이하	소방위 · 지방소방위 이하
p 178 1번 G	소방위 이상	소방경 이상
p 178 1번 해설	소방위 · 지방소방위 이상 소방장 · 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경 · 지방소방경 이상 소방위 · 지방소방위 이하
p 181 9번	소방위 이상, 소방장 이하	소방경 이상, 소방위 이하
p 200 61번 해설	시험실시권자의	삭제
p 207 80번 A	12년	10년
p 207 82번 A	6년	5년
p 210 89번 M 및 해설	12년	10년
p 311 101번 해설	회피란	기피란
p 311 101번 해설	기피에 대해	기피 및 회피에 대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18.5.31.] [대통령령 제28929호, 2018.5.31., 일부개정]

## 1.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내용

### (1) 소방청장 권한의 위임 조정

- ① 종전에는 소방청장이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면서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하였으나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도 가능하도록 하였다.(영 제3조 제2항 및 제3항)
- ② 그러나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영 제3조 제5항)

### (2) 임용시기의 특례(영 제5조)

- ① 그 동안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경우라도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순직 소방공무원의 사망 시기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을 각각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 ②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임용하도록 하였다.

#### 임용시기의 특례

- ① 순직한 사람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 ㉠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 ㉡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 ②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 ③ 시보임용예정자가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의 전날

### (3) 임용순위(영 제19조 제2항)

임용순위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5조제3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를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 (4) 응시수수료의 반환(영 제49조 제3항)

종전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였다.